

##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1
------------	-----

제출년월일 : 2005.

제출자 : 영주시장

### 1. 제안이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동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함

### 3. 자치법규안 : 덧붙임

### 4. 신·구 대비표 : 덧붙임

### 5. 참고자료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토지분 재산세과표경감)【도재정과-14971(2005.08.19)】 1부

##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주시세감면조례”를 “영주시세 감면조례”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율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 부 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30조의3은 2005년 12월31까지 적용한다.

## 신·구 대비 표

【영주시세감면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p>제30조의3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 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 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 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로 적용한다.</p>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 시일 변경으로 토지세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조문 정비

(제98회 - 총무 제1차)

“광복 60년, 새로운 시작”

##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토지분 재산세 과표 경감) 통보

1.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령-3069(2005.8.1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5월 4일 정부에서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100분의 50범위안에서 조정 가능)을 경감한 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행정자치부의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을 불임과 같이 시달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군세감면조례를 불임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할 경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 드립니다.

불임 :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 1부. 끝.

수신자

포항시장(포항시재정관리과장), 경주시장(세무과장), 김천시장(세정과장), 안동시장(세정과장), 구미시장(세무과장), 영주시장(세무과장), 영천시장(세무과장), 상주시장(세정과장), 문경시장(세무과장), 경산시장(세무과장), 군위군수(재무과장), 의성군수(재무과장), 청송군수(재무과장), 영양군수(재무과장), 영덕군수(재무과장), 청도군수(재무과장), 고령군수(재무과장), 성주군수(재무과장), 칠곡군수(세무과장), 예천군수(재무과장), 통화군수(재정과장), 울진군수(재무과장), 울릉군수(재무과장)

관인생략

접수자

★지방세무주사 박시용 재정과장

전결 08/19  
박종철

협조자 자방행정사무관 박종철 지방행정주사보 장진석 자방행정사무관 조자근

시행 재정과-14971 ( 2005.08.19. ) 접수 세무과-6043 ( 2005.08.22.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3689 / 전송 (053)950-2319 / name@gb.go.kr / 공개

## ○○시·군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군 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 자치단체별로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경감율 조정 가능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당초 표준안	개정 표준안
<신설>	<p>제29조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      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p> <p>* 자치단체별로 100분의 50범위 안에      서 경감율 조절 가능</p> <p>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제2조(적용시한) :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p>

## ○○특별(광역)시 ○○구세 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특별(광역)시 ○○구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 자치단체별로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경감률 조정 가능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당초 표준안	개정 표준안
<신설>	<p>제27조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p> <p>* 자치단체별로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경감을 조정 가능</p> <p>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p> <p>제2조(적용시한) :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p>

## ○○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 자치단체별로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경감율 조정 가능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9조의 신설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